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25

발의연월일: 2025. 1. 22.

발 의 자:조경태·정성국·이양수

엄태영 · 김상욱 · 유용원

김소희 · 김예지 · 안상훈

고동진 · 김태호 · 박정하

우재준 의원(13인)

제안이유

어떤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아 관리에 공백이 있었던 공해 및 심해저에 대한 무분별한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국제적 논의가 시작된 지 약 20년 만에 공해 및 심해저 해양환경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글로벌 다자조약인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BBNJ 협정)」이 지난 2023년 6월 정부간회의를 통해 공식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같은 해 10월 동 협정에 서명하였음.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등은 BBNJ 협정 비준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동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어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인 공해 및 심해저 관리를 위한 국제규범이 작동되도록 노력하고 있 는 상황임. 따라서, BBNJ 협정의 국내 비준과 발효에 대비한 국내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주요 내용인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과 그 디지털서열정보에 대한 접근·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유, 구역기반관리수단에 대한 조치 이행, 공해환경영향평가 수행절차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 제정 목적, 용어 정의, 국가의 책무 및 기본 시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 1) BBNJ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기 위한 법 제 정의 목적을 규정함.
 - 2)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디지털서열정보, 구역기반관리수단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공해 및 심해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와 국민의 책무, 정부의 기본 시책 수립등을 규정함.
- 나.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규정(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 1) 이익공유 규정 적용범위와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해 및 심해서 해양유전자원 현지취득 활동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함.
 - 2)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등 관련 활동으로 발생한 비금전적

- 이익과 금전적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하고, 이익 공유의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3)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한 해양유전자원등을 지정기관에 기탁·등록하도록 하고, 해양유전자원등에 접근하거나 분양을 받으려고 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다.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제안 및 관련 조치 이행 등에 관한 규정(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1)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연구기관 등 협의를 통해 협정 당사국총 회에 공해해양보호구역 등 구역기반관리수단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2) 협정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한 구역기반관리수단과 관련 조치 등을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 공해 및 심해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라. 공해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 작성 및 심사 절차 규정(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 공해 및 심해저에서 활동을 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공해환경영 양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해해양환경영향평가 실시 제외 활동 을 규정함.
 - 2) 예비평가서 작성,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서 초안 작성, 평가서에 기초한 활동의 승인 등 공해환경영향평가 수행 및 활동 승인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 3) 국가관할권 내 활동이 공해 및 심해저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다고 고려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라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함.
- 마.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보칙 등 규정(안 제28조부터 제38 조까지)
 - 1) 공해 및 심해저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규정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함.
- 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 위반 시 벌칙, 양벌규정 및 과 태료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이라 함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공해와 심해저를 말한다.
- 2.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이라 함은「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을 말한다.
- 3. "현지채집"이라 함은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이하 "공해등"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이하 "해양유전자원"이라 한다) 채집 또는 해양유전자원 시료 채집을 말한다.

- 4. "해양유전자원 이용"이라 함은 해양유전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유전자원의 유전적·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하여 생명공학기술 적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5. "디지털서열정보"란 해양유전자원에서 파생한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유전정보로 DNA와 RNA 서열 정보와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6. "공해해양보호구역"이라 함은 공해등에 특정한 장기적 생물다양 성 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관리되고, 보전 목적과 합 치하는 한 지속적 이용을 적절히 허용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정의된 구역을 말한다.
- 7. "구역기반관리수단"이라 함은 제6호의 공해해양보호구역을 포함 하여 공해등에 지리적으로 정의된 구역안에서 특정한 보전과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이 이상의 분야나 활동을 관리하는 수단을 말한다.
- 8. "대한민국 국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 나.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 내기업
- 9. "공해환경영향평가"란 공해등에서의 활동에 대한 승인을 할 때에 그 활동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

을 미리 조사·예측 및 평가하여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예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 군함, 군용항공기 그리고 해군보조함
 - 2.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 3. 정부가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공해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 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② 국가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공해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공해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 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해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기본 시책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공해등 해양생물다양성 보 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 등

- 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공해등 해양유전자원과 디지털서열정보(이하 "해양유전자원등"이라 한다)의 확보·관리·이용 및 해양유전자원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관한 사항
- 2. 구역기반관리수단 관련 조치 준수에 관한 사항
- 3. 공해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4. 개발도상국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5.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공해 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장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 이용 및 이익 공유

- 제8조(적용범위) ① 제2장의 규정은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 접근과 이용에 적용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의 조업활동
 - 2. 공해등에서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의 조업활동으로 획득된 어류와 그 밖의 해양생물자원. 다만,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의 이용에 해당하는 어류와 기타 해양생물자원은 제외한다.
 - ②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제3

조제1호 및 비상업용 업무에 사용하는 제3조제2호의 비군사활동에 적용된다.

- 제9조(활동에 대한 신고) ① 대한민국 국민이 공해등에서 해양유전자원을 현지채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해등 현지채집에 관한 계획서(이하 "현지채집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현지채집 실시 예정일 8개월 전까지현지채집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현지채집 계획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그 변경사항을 현지채집 실시 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대한민국 국민이 공해등 해양유전자원을 현지채집한 경우에는 채집 종료일 이후 10개월 이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현지채집 사후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대한민국 국민이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을 이용 또는 상품화한 경우에는 이용일 이후에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 ① 대한민국 국민은 공해등 해양유전자원 과 관련된 원주민 및 현지공동체에 속한 공해등 해양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해 접근할 때 자유로운 사전통고동의 또는 승인과 원

주민 및 현지공동체 참여를 통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해등 해양유전자원과 관련된 원주민 및 현지공동체가 보유한 공해등 해양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과이용이 원주민현지공동체와의 상호합의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익의 공유) ① 대한민국 국민은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 관련활동으로 발생한 비금전적 이익과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 이용과상품화로부터 발생한 금전적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금전적 이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제9조에 따라 채집한 공해등 해양유전자원 시료 및 신고된 정보에 대한 접근
 - 2. 공해등 해양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에 대한 접근
 - 3. 그 밖에 협정 당사국총회 결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적 이익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협정 당사국총회 결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이익공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기탁·등록) ①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

- 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이용한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을 기탁·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된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분양승인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된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에 접근하거나 분양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접근 및 분양승인을 할 때에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1. 해양유전자원의 물리적 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요건
 - 2.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이 기탁된 유전자원은행, 수장고, 데이터베이스 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 3.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접근 및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 및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나 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

- 고 접근 및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접근 및 분양승인된 해양유전자원등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접근 및 분양승인, 조건 부과, 용도 변경승인, 승인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14조(관리 및 유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장고 또는 데이터베이스 에 있는 해양유전자원등이 공해등에서 유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을 보유하고 있는 수장고 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관의 장에게 격년으로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 접근에 관한 집계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3항에 따른 집계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이행을 위하여 공해등 해양유전자원 등 등록·기탁을 위한 전문 수장고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정 제15조가 규정하는 접근이익공유위원회에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 관련 활동 및이익 공유에 관한 현황 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에 관련한 활동을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 채집·이용 및 이익공유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자료 제공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대한민국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구역기반관리수단

- 제16조(제안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해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해해양보호구역 등 구역기반관리수단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국가와 협의하여 협정 당사국총회에 제안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역기반관리수단을 제안하거나 다른 국가의 제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게 협의 및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 받은 관련 연구기관 등은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정보와 자료를 요청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7조(활동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정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한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한다.

- 1. 구역기반관리수단과 관련 조치
- 2. 비상조치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의 관련 조치 등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해등 해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8조(보고서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고시된 관련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하여 협정 당사국총회에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기반관리수단이 설정된 지역에서 활동한 대한민국 국민에 게 구역기반관리수단 관련 조치 의무 준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자료 제공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대한민국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공해환경영향평가

제19조(수행의무) ① 공해등에서 활동을 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하 "사업자"라 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는 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다.
- 1. 해양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따라 제4장에서 요구하는 영향평가와 상응하는 평가 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의 결과가 고려된 경우
- 3. 이 법 제4장의 요건과 동일하거나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잠재적 영향을 방지·경감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또는 국 제법에 따라 수립된 규정이나 표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 4.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 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 5.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 6. 제20조제2항에 따라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제20조(예비평가서 작성 등) ① 제19조에 따라 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 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활동의 목적과 공해등에 미치는 잠재적 영 향을 검토하여 예비평가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예비평가서를 검토하여 사업자에게 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명하거나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해환경영향평가 수행 면제를 부여한 이후에 협정 제31조제1항(a)에 따라 공해환경영향평가 수행 필요 의견이 제기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라 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공해환경영향평가 수행을 명하는 경우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행 면제를 받아 수행하고 있는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⑥ 제1항의 예비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평가준비서 작성 등) ①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해환 경영향평가 실시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평가준비서를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준비서를 검토하여 대상지역,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이하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평가 준비서에 대한 의견을 청취·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

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1항의 평가준비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고, 제2항의 평가준비서 검토, 제3항의 평가준비서 의견 청취·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평가서 초안 작성 등) 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가항목등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공해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해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를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공해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반영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사업자에게 공해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공해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방법 및 제출방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의 공해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의견 청취·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평가서 승인 등) ① 사업자는 활동의 승인을 위하여 제22조제2 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공해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수정·보완한 공해환경영향평가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공해환경영향평가서에 기초하여 활동

승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공해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이후에 공해환경영향평가 서와 관련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활동의 승인과 제3항에 따른 공해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또는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른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활동의 재승인)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에 따라 면제 확인을 받은 활동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승인 받은 활동을 변경하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5조(조사 및 보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승인 받은 활동의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의 정보공유체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23조제2항에 따라 활동을 승인받은 사업자는 해양환경에 대한 활동의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는 조사 보고서를 활동 개시 이후 정기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 보고서와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보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식 등과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다.
- 제26조(승인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승인된 활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인한 활 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활동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한 활동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계획한 활동으로 인하여 공해등 해양환경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정 제37조제4항에 따라 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활동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명령시 정한 기한내에 승인된 활동 지역에서 철수하 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명령에 관하여 그 사유와 위반정도 등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인된 활동의 승인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7조(공해등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 용영향평가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 가 수행을 위한 평가항목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요청 받은 경 우, 심의대상사업이 공해등에 실질적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영 향을 야기한다고 고려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등 결정에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해등에 영향이 고려되는 경우「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서 초안을 협정 정보공유체계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이후에 협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고려되는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해등에 영향이 고려되는 경우「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한 이후에 협의대상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협의, 승인 또는 지정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평가서 최종본과 관련정보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요구받은 처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서 최종본과 관련 정보를 협정 정보공유체계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해등에 영향이 고려되는 경우「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협정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 등

- 제28조(조사·연구) 국가는 공해등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 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 1. 공해화경영향평가
 - 2. 구역기반관리수단
 - 3.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
 - 5. 그 밖에 공해등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필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9조(기술개발) 국가는 공해등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해양유전자원등의 조사, 확보, 보존, 배양·증식, 복원 기술 등 생 명공학적 활용 기술
- 2. 해양생태계 서비스 측정·평가 및 증진 기술
- 3.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 예측·관리 등 보호가 필요한 구역 식별을 위한 기술
- 4. 훼손된 해양생태계 및 서식지 복원 기술
- 5.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조사, 관측 평가 등 공해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기술
-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해등 해양유전자원 등, 구역기반관리수단, 공해환경영향평가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1.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 조사, 확보, 보존, 배양·증식, 복원과 해양환경 조사, 분석 및 평가 관련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수립·시행
 - 2. 제1호 관련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 3. 제1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 조사
 - 4. 제3호의 실태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공해등해양유전자원등, 해양환경 조사, 분석 및 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1조(교육·홍보) 국가는 국민에게 공해등 해양생물다양성과 지속가 능한 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제6장 보칙

- 제32조(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수 있다.
 - 1.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 접근 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
 - 2. 구역기반관리수단 제안 및 준수에 관한 사항
 - 3. 공해환경영향평가 절차, 방법, 평가, 승인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해등 해양생물다 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 위하여 전문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제13조에 따른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의 보관, 보존, 관리 등
- 2. 공해등 해양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 3. 구역기반관리수단과 관련조치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 4. 공해환경영향평가 평가 과정에서의 의견 검토 또는 관련 보고서 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 5. 공해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개발도상국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 사 및 제공
- 6. 제7조 각 호의 사항
- 7. 협정 이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

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1. 제4장의 절차에 따른 공해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해등에 서 활동을 수행하였거나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사람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한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의심되는 증거 가 있는 사람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해등 해양유전자원을 채집하거나 그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디지털서열정보을 생성하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사람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있다.
- 제36조(재원확보) 국가는 협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8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제37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 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추 징한다.
 - 1. 제20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없이 공해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공해등에서 활동을 수행한 사람
 - 2. 제23조제2항에 따른 활동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활동을 한 사람
 - 3. 제26조에 따른 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
 - ②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의무 이행에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제출 서류를 작성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2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과태료) ①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의무 이행에 있어 제출 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지채집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 2.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집 종료일 이후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 3.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 또는 상품화 이후에 신고하 여야할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유전자원등을 기탁·등록 하지 아니한 사람

- 5.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양유전자원등을 접근 및 분양을 제공한자 및 접근한자와 분양받 은 자
- 6.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 해 또는 기피한 사람
- ③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협정」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